

## 15. 감사기관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에는 상법상 필요기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임시기관인 검사인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이 있다.

### 1. 감사

#### (1) 의의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사의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기관이다(412조). 따라서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상업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411조).

형식상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이지만 사내에서 진급하는 관계로 독립적 지위가 없고,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빈약해 실제로는 무력한 존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2) 선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409조 1항). 단,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409조 2항). 이것은 이사를 선임한 대주주가 감사마저 자기 의사대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선임 시에 소수주주의 의사도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위의 제한비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높일 수는 없다(409조 3항). 회사설립 시에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이 선임한다.

#### (3) 감사의 수, 임기, 보수

감사의 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인 이상이면 된다. 복수인 경우에도 각자가 그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한다.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이다(410조).(ex. 2001년 5월에 취임했다면 2003년 2월 결산주주총회까지) 그러나 중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결의로 정한다(415조에 따른 388조).

#### (4) 종임

감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특별결의로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415조에 따른 385조). 다만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결의를 하는 경우에 당해 감사는 그의 해임의 부당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09조의 2). 이것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의 지위의 안정·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의견진술은 감사해임안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리고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된 때에는 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감사의 권한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412조 1항). 이것은 감사가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사에 대한 보고요구권 및 회사조사권 - 업무감사를 위해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412조 2항).

3)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권 및 조사권 -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하였다더라도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412조의 4).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하여 분식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

4)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91조의 2 1항). 따라서 이사회에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에게는 의결권이 없다.

5)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하지 말도록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402조).

6)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 -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394조 1문).

7) 임시총회소집청구권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412조의 3 1항). 이 때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412조의 3 2항에 따른 366조 2항).

8) 각종의 소권 - 감사는 이사, 주주와 마찬가지로 회사설립무효의 소(328조), 총회결의취소의 소(376조), 신주발행무효의 소(429조), 자본감소무효의 소(445조), 합병무효의 소(529조) 등 각종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6) 감사의 의무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391조의 2 2항).

2) 비밀유지의무 -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415조에 따른 382조의 4).

3)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권 -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413조).

4) 감사록 작성의무 - 감사는 감사한 사항에 관해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의무가 있다(413조의 2).

5)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의무 - 감사는 매 결산기에 이사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447조의 4 1항).

## (7) 감사의 책임

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감사가 수임인으로서 그 임무를 해태하였을 때에는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414조 1항). 또한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감사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414조 2항). 위의 경우에 이사도 책임을 져야 할 때에는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414조 3항).

## 2. 감사위원회

### (1) 의의

주식회사는 정관규정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415조의 2).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2009년 개정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대신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하였다(542조의 11 제1항).

### (2) 구성

감사위원회는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와 달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415조의 2 제2항). 따라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가 다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사의 직무를 감사한다는 점에서 모순이고 종래의 감사보다도 그 지위의 독립성에 문제가 더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상법은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직무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다(단서).

감사위원회도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이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해임되지만(선임은 단순결의, 해임은 3분의 2 이상의 결의, 415조의 2 제3항), 2009년 개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권이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542조의 12 제1항). 즉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하였다(제2항).

### (3) 운영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415조의 2 제4항).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415조의 2 제5항).

### (4) 권한, 의무, 책임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는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가진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내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있지만(제393조의 2 제4항),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이를 번복할 수 없다(415조의 2 제6항).

## 3. 감사인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298조, 310조) 또는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417조 3항, 422조 1항, 467조, 367조, 542조 2항)를 조사할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 법원 또는 주주총회에 의해 선임되는 임시적 감사기관이다.

## 4. 외부감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 현재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자산=자본+부채)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감사 외에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회계전문가인 회계법인 등에 의해 한번 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외부감사인이다. 내부감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